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8
----------	-------

발의연월일 : 2023. 1. 12.

발의자 : 박정하 · 장동혁 · 조은희
김학용 · 김상훈 · 윤한홍
양금희 · 유경준 · 이 용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을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공항시설법」의 개정)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제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5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의 제목 “(이의신청)”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6조(「도로법」의 개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71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7조(「도시철도법」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심의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등”으로, “승인 고시”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 · 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듣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을 “인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 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52조제3항 중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9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1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p><u>것으로 본다.</u></p>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u>으로 본다.</u>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p><u>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p>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u>~ ③ (생략)</u> <u>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u></p> <p><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u></p> <p>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 ③ (생략) <u>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u></p>	<p>제5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u>~ ③ (현행과 같음)</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p> <p><u><삭 제></u></p> <p>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의제의</u></p>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한다.

<삭 제>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삭 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u>이의신청</u>)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1조의5(<u>부담금 부과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 특례</u>)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에 따른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략)</p> <p>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p>	<p>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p>

<p><u>고시하여야 한다.</u></p> <p>⑤ (생략) 제71조(<u>이의신청</u>) ① ~ ③ (생략)</p> <p><u>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p>	<p>「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p> <p>⑤ (현행과 같음) 제71조(<u>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p>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p><u>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u></p> <p><u>④ (생략)</u></p> <p><u><신설></u></p>	<p><u><삭제></u></p> <p><u>④ (현행과 같음)</u></p> <p><u>⑤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 · 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생략)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u>듣고</u> ,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들어야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	제2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5. (생략)

인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1. ~ 17. (현행과 같음)

②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를 받거나 등록 ---.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② (생략)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0조(인 · 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 · 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 ·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 ·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31.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0조(인 · 허가등의 의제) ① --

--- 인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
-----.

1. ~ 31. (현행과 같음)

②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p><u>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 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p>
<p>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 가 및 사용승인)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 여는 <u>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u> 준용한다. <후단 신설></p>	<p>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 가 및 사용승인) ① · ② (현행 과 같음)</p> <p>③ ----- ----- --- <u>「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u>----.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 시”로 본다.</p>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p> <p>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u>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p> <p>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u>이의신청</u>) ① ~ ③ (생략)</p> <p><u>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u></p>	<p>제28조(<u>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p>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4(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후단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